

신영 연금채권혼합 제1호 투자신탁

채권혼합형 투자신탁

[자산 운용 보고서]

(운용기간 : 2009.01.27 ~ 2009.04.26)

- 이 상품은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추가입금이 가능한 추가형 투자신탁입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증권빌딩 6, 7층
(전화 02-2004-9500, www.syfund.co.kr)

1. 기본정보

- 1. 개요 -----
- 2. 운용성과 -----
- 3. 자산구성 현황 -----

2. 상세정보

- 1. 상품의 개요 -----
- 2.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
- 3. 매매주식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을 -----
- 4.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
- 5. 운용전문인력현황 -----
- 6. 중개회사별 거래금액, 수수료 및 그 비중 -----
- 7.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 8.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 9. 분배금 지급내용 -----
- 10. 공지사항 -----

〈참고 펀드용어 정리〉



1.

: 1
 : 71941
 : ()
 : [] , 가

[]

(: ,)

| | | | (%) |
|----------------|----------|----------|-------|
| (A) | 54.92 | 85.82 | 56.26 |
| (B) | 0.13 | 0.16 | 23.32 |
| (C=A-B) | 54.79 | 85.65 | 56.34 |
| (D) | 53.59 | 83.6 | 56.00 |
| 가 (E=C/DX1000) | 1,022.38 | 1,024.57 | 0.21 |

) 가 가 (), () ()
 가 가

2.

가. (:%)

| | 1 | 3 | 6 | 9 | 1 |
|--|------|------|-------|-------|-------|
| | 0.06 | 0.21 | 1.35 | 2.44 | 3.22 |
| | 2.68 | 6.68 | 12.50 | -0.73 | -3.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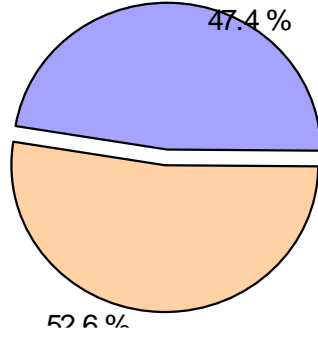
-> KOSPI :27%, 1 :54%,CD (91):19%

(:%)

| | 1 | 2 | 3 | 5 |
|--|-------|------|------|------|
| | 3.22 | 0.00 | 0.00 | 0.00 |
| | -3.19 | 0.00 | 0.00 | 0.00 |

-> KOSPI :27%, 1 :54%,CD (91):19%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41 | 0 | 0 | 0 | 0 | 0 | 0 | 0 | 45 | 0 | 86 |
| | (0.00) | (47.38)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52.62) | (0.00) | (100.00) |

10

| | | |
|--|-------------|-------|
| | | (%) |
| | 43-743-2-24 | 47.38 |

1.

: 71941
 : 2007.07.27
 : 가
 :
 :
 :
 :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

(: ,%)

| | | |
|--|---|---|
| | 가 | 가 |
| | 가 | . |

(: ,%)

| | | | | | | |
|-------------|----|----|------------|------------|--|--------|
| | 가 | 가 | | | | |
| 43-743-2-24 | 40 | 41 | 2007.10.24 | 2009.10.24 | | 100.00 |

(: ,%)

| | | | | | | | |
|--|----|----|--|--|--|--|--------|
| | 가 | 가 | | | | | |
| | 40 | 41 | | | | | 100.00 |

*

(: ,%)

| | | | | | | | |
|--|---|---|--|--|--|--|---|
| | 가 | 가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가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가 | 가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가 | 가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가 | 가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04.24 | 23 | | | 2009.04.27 |
| | | 2009.04.24 | 21 | | | 2009.04.27 |
| | | 2009.04.01 | 1 | | | 2009.05.04 |

(:)

| | | | | |
|--|---|---|---|--|
| | | 가 | 가 | |
| | 가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가 100 가 . 100%(1) 가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 0 | 0 | | | | | 0 | 1 | 2 |
| | 0 | 0 | | 0 | 0 | | | | | 0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08 | 0 | 0.07 | |
| | 0 | 0.18 | 0 | 0.17 | |
| | 0 | 0.01 | 0 | 0.01 | |
| | 0 | 0.00 | 0 | 0.00 | |
| | 0 | 0.26 | 0 | 0.25 | |

*

(: %)

| | | |
|--|------|------|
| | | |
| | 1.09 | 1.02 |
| | 0.00 | 0.00 |

* (Total Expense Ratio)

, 가 가 , , ,

5.

(: ,)

| | | | | | | |
|--|----|--|---|-------|----------------------------|-------------|
| | | | | | | |
| | 47 | | 3 | 5,188 | (7 4) (12 9) | 99010120004 |
| | 34 | | 7 | 625 | () (3 5) 2 (1 11) | 07010120036 |

* / 가 ,

6. [Redacted]

(:)

| | 02 | | | 03 | | | 04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02 | | | 03 | | | 04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 0 | 0 | | 52 (100.00) | | 0.00 |
| | 0 | 0 | | 0 | 0 | | 52 | | |

*

(:)

| | 02 | | | 03 | | | 04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7. [Redacted]

(:)

| | () | | | |
|-----|-----|--|--|--|
| 가 . | | | | |

8. [Redacted]

| | | | | () | |
|-----|--|--|--|-----|--|
| 가 . | | | | | |

9. [Redacted]

| | () | () | 가 | | |
|------------|-----|-----|----------|----------|--|
| 2008.07.28 | 1 | 35 | 1,037.89 | 1,000.00 | |

10. [Redacted]

()가

(www.kofia.or.kr)

: 34-12 6,7
: <http://www.syfund.co.kr>



| | |
|--------------------|---|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
| 주식형투자신탁 |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 신탁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수익자총회 |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 |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